

소식

NEWS

협회소식

제1회 이사회

2011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3일 오후 3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정관 개정 추진방안의 건과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민간자격제도 도입의 건, 회관 대지지분 정리방안 합의문 체결 요청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상 운영제도 도입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협의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2011년도 1~2월 중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건과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추진방안의 건
 - 정관개정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정관개정(안) 중 아래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45회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건축사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 개정(안)의 문구 조정 등 세부사항은 조성원 이사가 검토·확인한 후 시도건축사회장회의의 논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상정

구분	주요 골자
조직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에서 별도의 법인 또는 전문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조 제2항) • 공제조합의 의결기구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
회원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범위 확대 ◀ 업무신고 건축사→건축사등록원에 등록된 자 • 특별회원 자격 변경 ◀ 협회 기여자, 법인→교수, 공무원, 기술사 등 • 법인회원 (신설) ◀ 정회원이 건축사를 대표로 하는 법인건축사사무소
회장 직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투표제 신설 (안 제16조의2) ◀ 회장임기 1월1일 • 회장 직선제 신설 (안 제20조의3)
시도건축사회 관련 조항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건축사회의 운영관련조항을 삭제 (안 제42조~제51조) -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건축사회별로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

- 제2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중 아래와 같은 의견을 재경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고, 건축문화신문의 인터넷신문 전환방안 등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발간사업 예산안 관련
 - 회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현행대로 지급
 - 건축문화신문은 현행대로 개인별로 발송
- ▷ 시도건축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 운영예산 신규계상(600만원)
 - 현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서울·대구·경기건축사회 홈페이지의 통합관리를 위해 시스템 변환 필요
- ▷ 기타
 - 국제사업비 증액건의(약 2,800만원)
 - 일반회계 지원금(3억 5천만원)을 축소하고 회관건축자금 차입금을 우선상환

- 제3호 : 대한건축사협회 민간자격제도 도입의 건
 -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으므로 추진을 유보하고, 건축사 직능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함.
 - ▷ 다만,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보완
- 제4호 : 회관 대지지분 정리방안 합의문 체결 요청의 건
 - 법원의 판결내용과 총회 의결사항 등이 모두 유효한 것이므로 합의문을 체결할 사안은 아니며, 총회 의결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협의함.
- 제5호 :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상 운영제도 도입의 건
 - 특별상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임원 모두가 공감하므로, 행정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을 좀 더 검토·보완한 후에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 제6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협의의 건
 - 선거과열 방지를 위한 규정보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나 시기적으로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기는 곤란하므로 차기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 보완을 검토하도록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11년도 1~2월 중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회원제명 대상자(214명)에게 금년 1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하되, 그 기간 이후에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제명하고 해당회원

의 미납회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기로 함.

- 전남·경남건축사회에서 제명처분된 회원(7명)의 본협회 미납회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2011년도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1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추진방안의 건
 - 금번 제45회 정기총회('11.2.25)에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일부 조항만 상정하는 데에 시도건축사회장 모두가 공감함.
 - 오늘 상정된 정관개정안 중 법인추천대의원제는 삭제하고 임원 및 대의원 임기를 조정(2년→3년)하며, 부칙조항 등을 좀 더 보완한 후 2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직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에서 별도의 법인 또는 전문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조 제2항) • 공제조합의 의결기구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
조직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범위 확대 ◻ 업무신고 건축사→건축사등록원에 등록된 자 ※ 기존 협회 정회원은 정관개정안 제7조(회원)의 정회원으로 함. (부칙 제2조) • 특별회원 자격 변경 ◻ 협회 기여자, 법인→교수, 공무원, 기술사 등 • 법인회원 (신설) ◻ 정회원인 건축사를 대표로 하는 법인건축사사무소 • 모든 회원에 대해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부과 (안 제36조의 2)
임원 및 대의원 임기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 : 2년 → 3년 (안 제14조 제4항) • 임 원 : 2년 → 3년 (안 제22조 제1항)
회장 직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투표제 신설 (안 제16조의2) - 정회원 투표 회부방법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3분의2 이상 찬성 - 정회원 투표 결정방법 : 협회 정회원 과반수 참여, 참여 정회원 과반수 찬성 - 투표결과는 총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 • 회장 직선제 신설 (안 제20조의3) - 협회 정회원 투표 실시 후 최다 득표자로 당선자 결정 - 회장은 임기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출 - 회장은 당선된 다음해 1월1일부터 직무를 개시
시도건축사회 관련 조항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건축사회의 운영관련조항을 삭제(안 제42조~제51조) -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건축사회별로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
추대회원 자격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자격 25년이상 유지 만 65세이상~30년이상 유지 만 70세이상

- 제2호 : 201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 원안에 동의하되, 건축문화신문과 건축산업대전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제1회 건축자재 추천 T/F

제1회 건축자재 추천 T/F 회의가 지난 1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자재 추천 심의의 건
 - (주)일신산업의 Low-E(로이)단열재를 심의한 결과 평점 85점으로 추천자재로 적합하다고 판정함.

■ 제1회 건축영화제 T/F

제1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1월 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최시기는 잠정적으로 9월에 시행하는 것을 추진함.
 - 장소는 1안으로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로 정하며, 대관료 없이 러닝캐런티로 극장 대관 가능한 곳을 조사하기로 함.
 - 원활한 스폰서링을 위해 협찬금 외주계약을 추진하기로 함.
 - 국토해양부에 국토해양부장관상 1점을 본 영화제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건축UCC공모전, 단편영화경쟁부문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
 - 건축영화 선정이 본 위원회 외부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함.
 - ▷ 현재 외부위원들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의사표현을 함.

■ 제1회 문화홍보위원회

제1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홍보사업' 평가의 건
 - 건축영화제를 친환경·우수디자인 건축자재 전시회와 같은 부대 행사와 함께 개최해 협찬금 협조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함.
 - 올해 건축영화제는 예산협조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영화제 개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현재 건축영화제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방 및 일부 회원들에게 있음. 제3회 건축영화제에 대한 시간, 장비, 예산 등을 포함하는 올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임 회장 취임 후 개최하는 워크숍에서 보고서를 통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함.
 - ▷ 문화홍보위원회에서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업계획서를 2월중으로 마련하기로 함.
 - 건축영화제 위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원들을 발굴해 위원회를 보강해야 함. 현재 외부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위원사퇴시 행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은 제2호의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도록 함.
- 제2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건축연구원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장이 검토 요청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당해 예산안을 증감 조정함.
 - 기타 기금관리운용회계 예산안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예산결산소위원회안을 잠정 결정하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재경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아울러, 2010년도 결산결과 확정되는 이월금수입을 반영하여 각 회계별 예산안 세입부문 이월금수입과 세출부문 예비비 등을 증감 조정토록 함.

■ 제1회 재경위원회

제1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의 건
 -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도록 함.
- 제2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축조·심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사업계획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재경위원회안으로 결정(잠정)하여 1월 이사회 및 시도회장회의에 협의 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함.
 - 아울러, 재경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및 시도회장회의에서 협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회의시 위원회안을 최종 확정기로 함.

■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수지결산안 심의의 건
 - 2010회계년도 수지결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전표 확인등)은 감사수감결과를 수용키로 하고,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건의하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심의함.
- 제2호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의 건
 - 제3호의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

산편성지침안을 수정 보완토록 함.

- 제3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1회 이사회('11. 1.13)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조정하고, 기타 9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위원회안을 확정된 후, 이를 재경위원회에 제출키로 함.

■ 제2회 재경위원회

제2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수지결산안 심의의 건
 - 2010회계년도 수지결산안을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 ▷예산결산소위원회 건의안을 이사회 자료에 명시
- 제2호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완료함.
- 제3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 ▷예산결산소위원회 협의결과 및 건의사항 이사회 자료에 명시

■ 제1회 행정위원회

제1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안) 검토의 건
 - 제16회 행정위원회('10.10.16) 이후 추진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별도의 논의 없이 이번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상 운영의 건
 - 특별상 운영규정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며,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 제1조 목적중 '교육·사회활동'을 '교육·건축사협회활동·사회활동'으로 문구 추가
 - ▷ 제2조(운영위원회) 제2항 삭제, '구성한다'→'둔다'로 수정
 - ▷ 제2조 및 제3조 내용중 '특별상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로, '특별상 내용'→'내용'으로 수정
- 제3호 :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발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 개정안 제2조 제4항 '회장이 임명'→'회장이 위촉'으로 수정
 - ▷ 개정안 제3조 제2항 삭제
 - ▷ 개정안 제8조(광고비 등)는 현행대로 하되, 제2항중 '프레스센터 장의 승인'을 '편집위원장의 승인'으로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
 - ▷ 부칙은 사무처에서 내용 확인 후 검토·보완

- 제4호 :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수납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5호 : 보수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6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금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11.1.25)된 대로 정관개정 이후에 근원적으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차기 집행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개진함.

협회소식

대한건축사협회-흥국화재보험(주)·한화손해보험(주), 손해배상공제 업무제휴 체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최영집)은 지난 1월 18일 오후 15시에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흥국화재보험(주)·한화손해보험

(주)과 손해배상공제업무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조합 최영집 이사장을 비롯하여, 흥국화재보험(주) 김용권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주) 신동진 전무이사 등 보험사 관계자들과 조합이사 및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이번 손해배상공제 업무제휴 협정을 통해 본격적인 공제사업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2010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최종 결과가 지난 1월 7일 발표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격증교부식이 개최됐다.

이날 자격증을 수여받게 된 최종합격자는 296명으로 남성 238명(80.4%), 여성 58명(19.6%)이다.

수여식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오늘이 있기 까지 그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건축에 대한 열정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며 “대한건축사협회도 건축사 여러분들의 능력개발과 자질 함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축문화와 관련한 다양

한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로부터 친환경 건축인력 양성사업기관으로 지정되어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를 시행한지 벌써 6기에 이르고 있다.”며 “협회는 법·제도개선, 시장질서 회복과 확대, 국제환경에 대비한 자격제도 정비,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등 건축사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구심점이자 건축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사공제조합도 설립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축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자격증 수여식에서는 남녀대표 및 과목별 고득점자 5명이 최영집 회장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안내 및 소양교육을 끝으로 건축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2010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296명 명단, 본지 통권 501호(2011년 1월호) 84페이지 참조)

대전건축사회, 건축디자인자문제도 및 연금제도 설명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손근익)는 지난 1월 28일 건축디자인자문제도 및 연금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건축되는 건

축물 중에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를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에 두고 그 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대전건축사회 연금제도의 시행에 앞서 그 재원과 연금관리회 세칙들에 관한 설명회도 가졌다.

이광수 건축사(대전광역시건축사회 부회장)는 연금제도는 우리 건축사회 회원의 노후대비와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그 뜻을 밝혔다.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